



제 549호 2023. 3. 16(목)

입법예고

제2023-1175호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입법예고 34523

고 시

제2023-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신지지구 지구단위계획) 34528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제2023-71호 대동면 신동1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34532

공 고

제2023-1180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에 34533
 따른 열람 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3-1175호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입법예고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2. 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산정 및 징수기준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04. 06.까지 김해시장(참조 : 하천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김해시 하천과

○ 주 소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 전 화 : 055-330-6872 (FAX : 055-330-4829)

○ E-mail : zerokk@korea.kr

붙임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 1부.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김해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 안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 호안(기슭 · 둑 침식 방지시설) ·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 · 방파제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 · 사용[하천 · 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 ·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 ·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 · 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 · 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text{m}^3/\text{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 m^3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text{m}/\text{sec})$ </div>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146^2 \times 60$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 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p>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²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1.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055-330-36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3. 16.

김 해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 : e편한세상 주촌 더프리미어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1) 상 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2) 대표자성명 : 민관식
- 3)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다.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1)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3-2번지 일원
- 2) 면 적 : 52,137㎡
- 3)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7,774.4544 ㎡
 - 건축연면적 : 178,565.2242 ㎡
 - 주택평형별 및 규모

구 분	건물규모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	주거공용	세대수
공동주택 (민간분양)	지하2층~ 지상29층 공동주택 (9동) 및 부대복리 시설(11동)	992세대	110.4453	84.9986	25.4467	442세대
			111.9996	84.9974	27.0022	155세대
			129.4204	99.9051	29.5153	147세대
			130.9464	99.9951	30.9513	28세대
			149.025	115.5239	33.5011	219세대
			149.0266	115.5239	33.5027	1세대
			121,653.5602	93,645.1487	28,008.4115	992세대

○ 부대건물현황

구 분	규 모		비 고
	층 수	연 면 적 (㎡)	
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	지하1층 ~ 지상1층	2,082.4649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지상 1층	164.3239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지상 1층	478.4151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지하 1층	142.1274	
주민운동시설(헬스,스크린골프)	지하 1층	1,308.3532	
관리사무실	지상 1층	261.5555	
경비실	지상 1층	41.3040	
펌프실/전기실/발전기실	지하 2층	588.2493	
지하주차장	지하 1층~2층	49,337.0128	
근린생활시설1	지하 2층	1,315.8624	
근린생활시설2	지하 2층	1,191.9955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2022. 7. ~ 2025. 12. 22.

2.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붙임1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마.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1>

김해도시관리계획(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8-5번지 일원	57,866	감) 10	57,856	김해시고시 제2022-28호 (2022.1.28.)	

나. 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	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기정) 57,866m² 변경) 57,856m²(감 1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866	감) 10	57,85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7,866	감) 10	57,856	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가) 총괄표

구분	구역명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2	633 (500)	9,900.7 (5,729)	-	-	-	2	633 (500)	9,900.7 (5,729)	-	-	-
	변경	2	633 (500)	9,890.7 (5,719)	-	-	-	2	633 (500)	9,900.7 (5,719)	-	-	-
소로	기정	2	633 (500)	9,900.7 (5,729)	-	-	-	2	633 (500)	9,900.7 (5,729)	-	-	-
	변경	2	633 (500)	9,890.7 (5,719)	-	-	-	2	633 (500)	9,900.7 (5,719)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또는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8	9~20	국지 도로	378 (245)	소로2-10	소로2-10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22-28호 (2022.1.28.)	
기정	소로	2	134	9~15	국지 도로	255	소로2-58	선지지구 동측 구역계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134	9~15	국지 도로	255	소로2-58	선지지구 동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김해시고시 제2022-28호 (2022.1.28.)	면적변경
----	----	---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2-134	소로2-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면적 변경 기정) A=3,626m² 변경) A=3,616m² (감 1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측량에 따른 도로면적 감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합계		57,866	57,856	-	-	57,866	57,856	-
가	A	52,137	52,137	1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8-5번지 일원	52,137	52,137	공동주택용지
도로		5,729	5,719	-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218-9번지 일원	5,729	5,719	도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및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합계	A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및 부대복리 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 220% 이하 허용 : 242% 이하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한함)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층 이하

3. 선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 생략

김해시고시 제2023-71호

대동면 신동1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김해시 대동면 조누리 신동1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대동면 신동1구 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목적 : 마을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3. 사 업 비 : 5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누리 신동1구마을 일원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확충 : 힐링센터 조성, 힐링마당 조성, 안전한 마을안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건강프로그램, 경관페인팅 교육, 리더 및 주민교육 등
5.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6. 사업기간 : 2023. 3. ~ 2024. 12.
7.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055-330-6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공고 제2023-1180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서류 등을 열람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16.

김 해 시 장

1. 위 치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20-7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8호선)사업
 - 명 칭 : 북부우회도로(대로3-1-8호선) 개설공사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 설 명	도시계획시설		금회 시행규모				비 고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		
					기정	변경	
대로3-1-8호선	1,163	25~35	378.4	25~29	13,578	13,577	경고 제1999-39호 (1999.03.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9. 5. 3. ~ 2023. 5. 2.
 - 변경 : 2019. 5. 3. ~ 2024. 5. 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 보상협약에 따른 토지소유자 변경 및 보상협약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5)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삼계동	820	도	2,681	467	김해시					기정
2	"	832-2	전	955	17	박*수	***				기정
3	"	832-12	전	1	1	김해시					기정
4	"	832-11	전	772	772	김해시					기정
5	"	832	전	239	151	김해시					기정
6	"	산180-1	임	10	10	김해시					기정
7	"	산85-9	임	888	888	김해시					기정
8	"	산180	임	1,484	130	김해시					기정
9	"	833-1	답	48	48	김해시					기정
10	"	834-1	전	332	332	김해시					기정
11	"	833	답	673	120	이*기	경상남도 김해시 울하*로 **, ***동 ****호 (울하동, 울상마을**** *단지)				기정
12	"	산120-16	임	2,421	2,421	김해시					기정
13	"	산 120-17	임	645	645	박*대	부산광역시 남구 **동 ***-*				기정
14	"	산 120-15	임	207	207	김해시					기정
15	"	산179	임	1,595	193	김*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션시티 **로 **, ***동 ***호(명지동,** 도시** *차)				기정
16	"	산 120-14	임	64	64	김해시					기정
17	"	산179-4	임	1,708	1,708	김해시					기정
18	"	산 120-18	임	269	269	엄*섭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 ***동***호(내동, 경원마을**아파트)				기정
19	"	산 120-21	임	2,135	2,135	김해시					기정
20	"	산120-7	임	1,551	32	엄*섭 김*숙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 **, ***동***호(내동, 경원마을**아파 트)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삼계동	산120-19	임	64	50	김해시					기정
22	"	734-1	전	11	7	김해시					기정
23	"	733-4	전	31	11	김해시					기정
24	"	1344-184	천	969	174	국토교통부	국				기정
25	"	840-2	천	7	7	김해시					기정
26	"	839-2	천	155	3	박*연	김해시 부원동 ****-**				기정
26	"	839-6	천	3	3	김해시					변경
27	"	840-1	답	112	112	하*준	내동 ****-* 임호마을 **아파트 ***동 ****호				기정
27	"	840-1	답	112	112	김해시					변경
28	"	840-3	답	265	265	김해시					기정
29	"	840-4	천	82	82	김해시					기정
30	"	839-3	답	731	106	박*윤 정*옥 정*옥 정*옥	김해시 경원로 **, ***동 ***호 (내동, 임호마을**아파 트) 김해시 생림대로 ***-* 진주시 사들로 ***, ***동 ***호(충무공동, **도시****아파 트 *단지)				기정
30	"	839-7	답	60	60	김해시					변경
30	"	839-8	답	44	44	김해시					변경
31	"	839	답	605	319	정*옥 정*옥 정*옥	김해시 생림대로 ***-* 진주시 사들로 ***, ***동 ***호(충무공동, **도시****아파 트 *단지)				기정
31	"	839-4	답	320	320	김해시					변경
32	"	1344-183	천	125	109	국	국토교통부				기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삼계동	838-2	도	296	135	경상남도					기정
34	"	1343	도	592	161	국토교통부	국				기정
35	"	850-1	도	5,419	157	경상남도					기정
36	"	850-7	도	84	84	경상남도					기정
37	"	1344-182	천	947	798	국토교통부	국				기정
38	"	731-1	답	63	3	김해시					기정
39	"	730-8	답	275	119	김해시					기정
40	"	841	답	60	45	김해시					기정
41	"	1345-3	도	84	35	국토교통부	국				기정
42	"	725-6	도	318	186	경상남도					기정
합 계 (기정)				29,973	13,578						
합 계 (변경)				28,909	13,577						